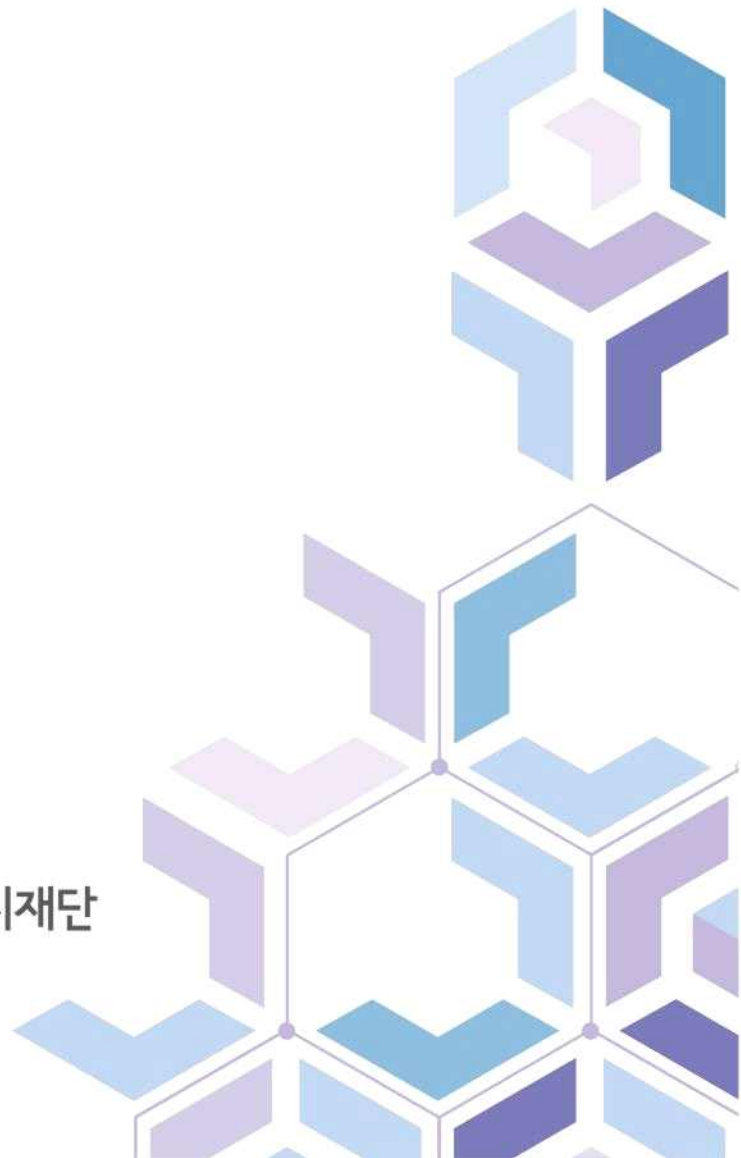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I 추진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 주거정책(17.0%)로 나타났으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 저소득층(16.4%)으로 나타남
-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구 대상지원이 필요
-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으로 2011년 '희망온돌 광역기금'으로 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 II 2020년 주요 결과

- 추진기간 : 2020. 3월 ~ 12월
- 지원결과 : 총 348가구 신청, 155가구 / 602,050천원 지원 (197가구 선정, 427가구 취소)
- 만족도 결과

구분	이사 전 주거 만족도		구분	이사 후 주거 만족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불만족	85	54.1%	매우불만족	1	0.6%
불만족	48	30.6%	불만족	1	0.6%
보통	12	7.6%	보통	8	5.1%
만족	5	3.2%	만족	38	24.4%
매우만족	6	3.8%	매우만족	107	68.6%
정보없음	1	0.6%	정보없음	1	0.6%
전체	157	100.00%	전체	156	100.00%
평균	1.71점		평균	4.61점	

구분	이사 전 삶의 질		구분	이사 후 삶의 질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0점	36	23.8%	0점	0	0.0%
1점	70	46.4%	1점	1	0.7%
2점	29	19.2%	2점	0	0.0%
3점	10	6.6%	3점	17	11.3%
4점	1	0.7%	4점	63	42.0%
5점	4	2.6%	5점	68	45.3%
정보없음	1	0.7%	정보없음	1	0.7%
전체	151	100.0%	전체	150	100.0%
평균	1.21점		평균	4.31점	

□ 참고자료 : 2019년 탈락사유(127건)사유분석 결과

연번	구분	1차	2차	3차	4차	합계(건)
1	제출서류 미비함	2	13	12	5	32
2	신청서 작성내용 미흡함	-	4	4	1	9
3	부채변제 가능성 있음	-	6	2	2	10
4	월세체납 위험 높음	-	-	-	21	21
5	자산 소유하고 있음	5	19	1	18	43
6	신청 상 선행요건* 미 충족함	4	9	5	37	55
7	타 주거지원제도가 더 적합함	1	4	10	8	23
8	근로능력 있음	-	5	2	2	9
9	부양의무자 존재함	-	2	-	-	2
10	본 사업에 대해 이전에 지원 받았음	-	1	-	-	1
2019년 차수별 합계		12	63	36	94	207

\* 선행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모두를 포괄함)

- 금융부채 해결 후: 채무상당, 부채조정, 파산면책 완료 이후 등
- 생계안정 후: 수급자 신청·처리, 생계비 신청, 신용회복 등
- 안정적 주거계획 수립 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 법률적 분쟁결과 명확해진 후: 자가명도소송, 본인부담금소송 등

III

2021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명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신청접수 4~10월까지)
- 사업예산 : 7억 6천만원(총 지원금 724,200천원)
- 배분계획 : 7회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 이문현
  - 이메일 / 전화 : moonhyun5@welfare.seoul.kr / 02-6353-0303
  - 카카오톡 ID : moonhyun5

## □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가구, 최대 600만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주거지 계약 후 사후지원기관의 3개월 간 사후지원 필수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 □ 주요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120% 상향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지원금 확대 (500만원⇒600만원)
서식	- 서약서(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적극 참여, 지원금 보존 서약/임대인 서명 삭제) - 선정공문 및 선정안내문 발송으로 집 계약 시 활용	- 신청서 및 내부심의기준 수정 · 신청서: 경제, 주거 등 영역별 구분 · 내부심의기준: 위기영역 세분화 및 주거위기에 가중치 부과

## □ 2021년 주요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자치구담당자간담회	2021.3.5.(금)	
사업설명회	2021.3.22.(월)~26(금)	
신청접수	매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1주 전 안내공문발송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배분(솔루션)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선정기관 교육	사후지원 및 결과보고 작성 등	

## □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접수 7일 전 안내) (자치구에 공문 발송,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대상자 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신청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신청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신청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신청기관	· 배분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 「사용 연장 승인」 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 <b>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b> )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b>임대인</b> 계좌로 입금 (선정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선정기관→ 자치구 → 복지재단	· <b>선정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3개월)</b>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전자결재(LDAP)로 제출
평가 및 점검	복지재단 → 선정기관·지원가구	· 평가 및 점검 기간 : 사업기간 중 · 선정기관 및 선정 가구 · 집행내역, 만족도, 사후지원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b>120%</b>	<b>2,193,397</b>	<b>3,705,695</b>	<b>4,780,740</b>	<b>5,851,548</b>	<b>6,908,848</b>	<b>7,954,324</b>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50%(교육)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45%(주거)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40%(의료)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30%(생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b>120%</b>	<b>2,193,397</b>	<b>3,705,695</b>	<b>4,780,740</b>	<b>5,851,548</b>	<b>6,908,848</b>	<b>7,954,324</b>
직장가입자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지역가입자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혼합	-	129,761	168,195	206,575	242,008	286,73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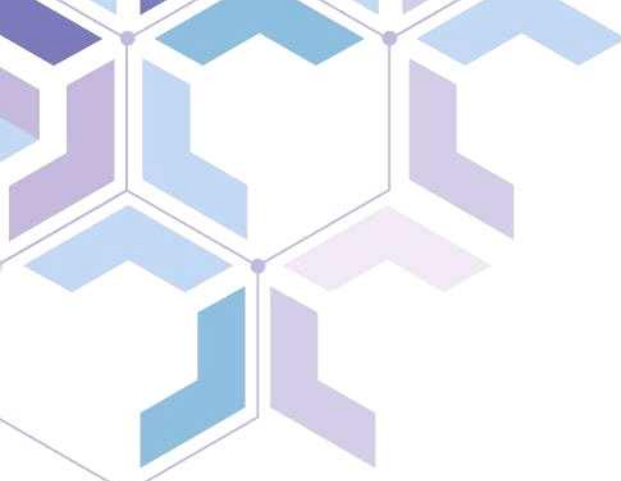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 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 예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 토대로 신청일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로 같음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 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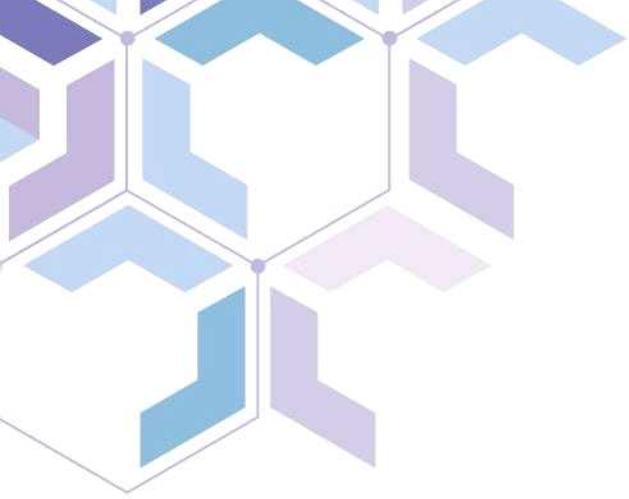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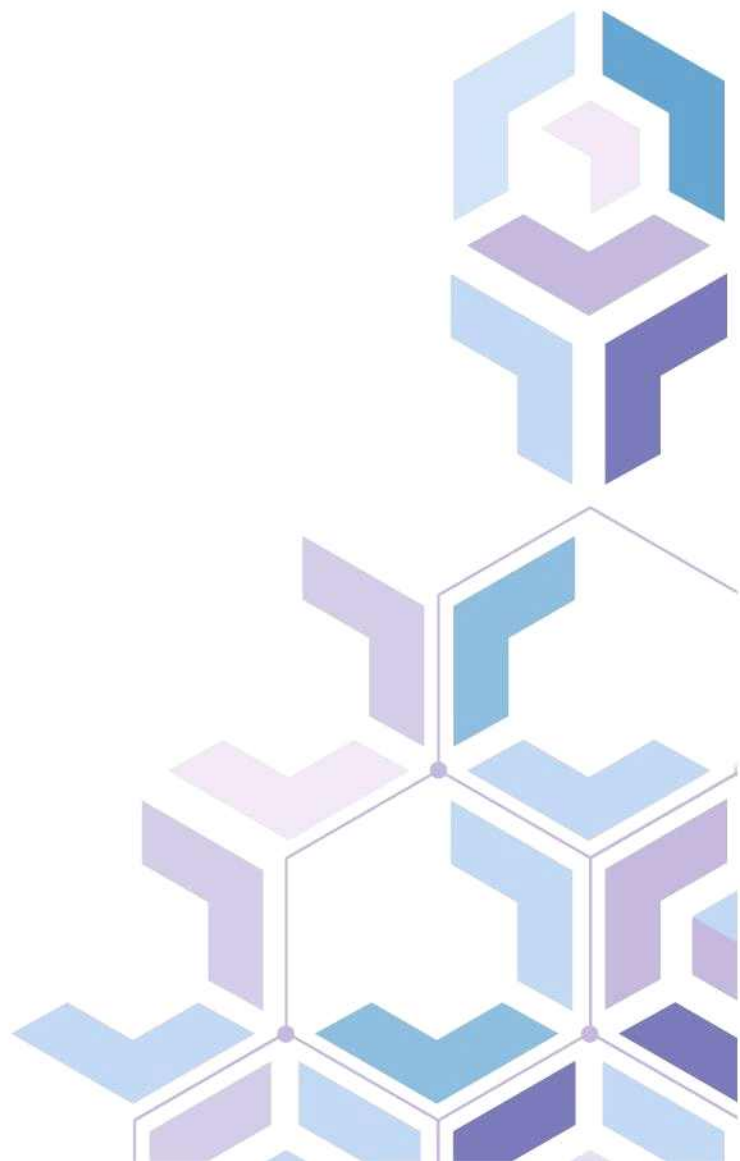
#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1.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2. 신청기관 담당자 업무매뉴얼
3.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서식
4.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 I 주요역할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추진되는 희망온돌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취약위기에 놓인 구민이 적절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설명회, 간담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신청기관이 신청 및 지원받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II 업무절차

주요 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4주(월 1회)
↓		
접수 취합 및 자료 확인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신청서 제출	자치구⇒재단	매월 2주 금요일
↓		
선정안내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연장·취소자 관리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III 세부업무

- 업무담당 : 자치구 희망온돌사업 담당자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중 사업담당자 **변경 시, 재단에 담당자 변경 안내 필수**

## □ 신청 안내

###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 접수 1주일 전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문서 접수 후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전달**

#### ★ 중요 ★

-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는 전자문서 전달이 되지 않은 곳으로, 담당자 파악 후 메일 전송 필요
- ‘신청기관 ▶ 자치구’ 신청기간은 자치구의 임의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기관으로 전달 단, ‘자치구 ▶ 재단’ 신청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 접수 취합 및 자료 확인

### ○ 취합 기간 : 신청접수 안내 공문에 표기된 ‘자치구 ▶ 재단’ 제출일 준수

### ○ 취합 방법

- 동주민센터 ▶ 자치구 전자결재(LDAP),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 ▶ 자치구 담당자 메일 제출
- 신청서는 자치구 담당자 작성이 필요하므로 한글파일(.hwp)로 제출  
제출자료 목록은 서명 후 스캔하여 PDF, 이미지파일로 제출
- 자치구 담당자 취합 및 자료 검토

#### ★ 중요★ 자료 검토 시 필수체크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되었으며,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신청서 2면, 자치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작성
- 당사자 가구유형, 보장구분, 긴급복지지원여부 등 다시 한번 확인
- 최종 제출일 및 담당자 이름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 확인부분 작성 누락된 경우 심의에 올릴 수 없음.

거주 환경	<input type="checkbox"/> 주택 위주 <input type="checkbox"/> 주거계류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관광시설 <input type="checkbox"/> 주상복합(위부품기 가동)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숙 (기허(반지하포함))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택 ( )인원 <input type="checkbox"/> 2인 <input type="checkbox"/> 3인 <input type="checkbox"/> 4인 이상
사건 계약 현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존 거주기 계약 연장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 ) 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 ( ) 만원
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2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3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현재 거주지역 계속 살 수 없는 이유와 환경 등을 기술 동거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내용 등을 기술	
주요 상당결과 및 의견	임대보증금 상환 기간 연체 사유 변경 사유 (각 주택 별로 임대료 작성)	본인(동거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기술 본인(동거 가족)의 건강관련 수입 발생 가능성 등을 기술 동거가족의 연세 및 거주지역 유흥가 지인 등을 기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의 거주지역 유흥가 지인 등을 기술	
자치구	( ) 구	* 자치구 공문 발송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OO구청 OO동OO로OO동OO동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당사자, 담당자, 팀장 서명 확인**
- 서명이 되었으며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스캔되었는지 확인
- 목록에 의거 **증빙자료 잘 들어왔는지 확인**

신청 차수	차	신청자치구	구	신청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담당자	(인)	담당 팀장 (기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임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후 상임직무 변경이유를 명시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증빙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02-0501-725 0501)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중요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02-0501-0801) 0801	
선택 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매달증빙서류 선택)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시원 거주확인, 월세 안내문, 퇴거명령서 내용 증명서 등	
		부채 증빙 자료	-	서울이음(희소예정)확인서	
		과다소득신고 관련 증명	-	과다소득신고 관련 증명서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	시청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	시청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등		

※ 서로 미비로 인해 불이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부 제출

[서식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 □ 신청서 제출

- 제출필수자료 : **신청서 서식1, 신청 제출자료 목록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3, 소득 확인 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증빙서류 서식4,5**
- 신청기한에 맞추어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용량이 커서 한번에 보내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명 별로 결재하여 제출
- 1명의 용량이 크면 2번에 나누어 보냄 **※ 첨부서류 메일로 전송은 절대 불가. 심의하지 않음**

구

수신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0년 6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한*수)

1. 지역복지통합본부-5093(2020.8.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구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희망은들) 6차 신청자가 있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자 현황

행정동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금액	사례관리기관	비고
동			5,000,000	경 희망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붙임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제출 예시

## □ 선정안내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 자치구 ▶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공문으로 전달

**★ 중요 ★**

- 신청기관에 심의(솔루션)내용 수정 없이 전달
- 신청기관별 구분하여 전달
- 신청금액과 선정금액 차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조건부 선정의 경우, 해당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기존 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100만원 초과) 등 재산이 있을 시 차감하여 선정

**ex) 본인부담금 5%(450만원) - 기존보증금 = 지원금액**

서울시복지재단

I-SEOUL-U

수신자	구청장(복지정책과장)
(참조)	
제목	2020 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결과안내 및 협조요청( 구)

1. 평소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청하신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관련하여 결과통지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례관리기관에 통보와 진행절차에 협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No	구분	신청기관	신청금액	선정금액	심 의 (솔루션)내 용
1		주민센터	5,000,000	0	<b>미선정</b>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땅한 것을 내기 기관 등으로 지원 확정됨에 따라 미선정함
2		주민센터	5,000,000	0	<b>미선정</b> = 현재 매입임대금액이 42,240,000원으로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임 = 향후 지원범위 내, 안정적 주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거계획을 수립한 후 재신청 필요함 * 개인정보통지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 제3차 제공 통지서 부동의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어려움
3		주민센터	5,000,000	4,500,000	<b>조건부선정</b> = 공공전세임대 신청을 통해 안정적 주거 확보 후 본인부담금 5% 지원

협조요청사항

**\*가. 지원금 소진되지 않도록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요청**  
 1) 2020.09(토)까지 선정요청, 최대 7(금)까지 선정가능, 09월 후 취소됨.  
 2) 지급요청은 자치구를 통해 공문접수 및 관련자료 제출  
 3) 선정 후 3개월(~7.31(금))간 사후지원 후 결과보고 제출

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선정안내 예시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 집 계약 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서류 재확인)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서약서,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 **중요** ★

- 제출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 일 제외) 지급
- 재단에서는 사후지원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
- **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0000(2020.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20년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 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결정 대상자

대상자	사후지원 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원)	비고
홍길동 (50.05.14.)	00동주민센터	4,800,000	4,500,000	SH공공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신청
이순신 (43.12.14.)	00종합복지관	5,000,000	5,000,000	일반가구계약
(43.12.14.)	00종합복지관	3,000,000 (본인부담금 5%- 기존 보증금)	3,000,000	SH공공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에서 기존 보증금 제외한 금액 지급

- 붙 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2. 이순신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끝.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지급신청 공문 예시

결과보고서 서식6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결과보고서, 등본 송부 필수**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파일(.hwp) 로 송부될 수 있도록



□ 연장·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취소되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재단 ⇒ 신청기관에 기간 초과 시 연락하여 확인, 자치구는 공문 전달 역할 수행
- 선정 취소 경우, 해당 사후관리 기관을 통해 선정 취소사유가 포함된 공문 전달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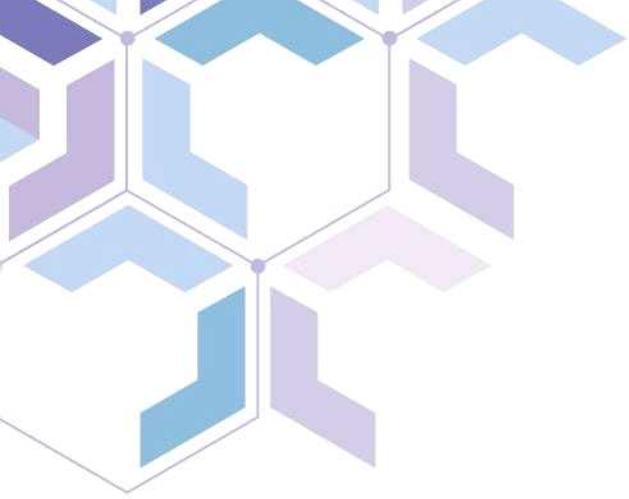
- 차수 및 지원금, 취소사유를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 공문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 문서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필수

수 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경유)				
제 목		2020년 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 취소 요청(차00)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2020. )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대상자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취소 내용				
대상자	신청기관	신청차수	신청금액	취소사유
	주거복지센터	차	500만원	NH전세임대주택 선정 후 최대 자부담 보증금 450만원으로 계약하려했으나, 임대인의 거부로 최저 보증금 50만원을 본인에 자부담하여 계약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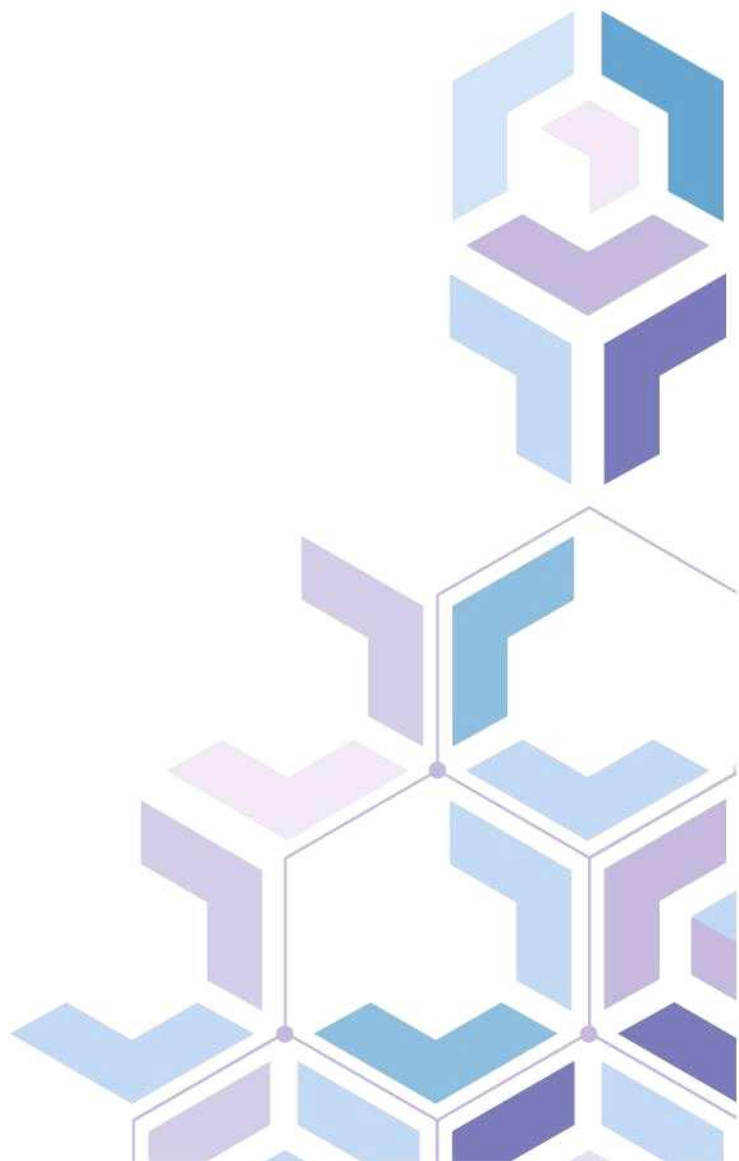
붙임: 신청기관 지원취소요청 공문 1부, 끝.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 포기신청 공문 예시





# 신청기관 담당자 업무매뉴얼





## I 주요역할

- 주거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최소 3개월 간 사후지원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설명회, 간담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II 업무절차

주요 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상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선정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대상자 집계약 후
↓		
사후지원	선정기관⇒대상자	상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후
↓		
연장·취소자 관리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상시

## III 세부업무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 :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단순 지원 연계가 아닌 3개월 간의 사후지원 진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당사자가 주거확보 후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주거담당이 이를 담당할 경우, 사후지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단, 동 상황에 따라 주거담당이 3개월 사후지원이 가능한 경우 가능)
  - 복지플래너가 진행하는 내부사례회의 또는 동통합사례회의에 ‘주거담당’이 참여하여 필요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안내 역할 및 당사자가 주거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 □ 신청 안내

###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치구 : 접수 5일 전 안내>

- 자치구에서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전달
- 자치구의 마감기한에 맞춰 자치구로 제출

### ★ 중요 ★

- 기존 사후지원 대상자 ⇒ 사업 안내 ⇒ 동의 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당사자(직접방문) ⇒ 내부사례회의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주거위기취약인 상태

#### [2020년 기준 선정자 특성]

-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중위소득 50%~120%(건강보험료) → 차상위
- ▶ 수급자 및 차상위가 아닌 중위소득 50%~120%(건강보험료) 또한 54.1% 선정됨.  
공공부조 기준안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일지라도 '실업, 주소득자 상실, 이혼 등'의 사유로 필요함.

## □ 신청서 작성

###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_서식1

- 차수 : 공문 확인 후 차수 확인
- 신청금액 : LH/SH 선정된 경우 ⇒ 본인부담금 5%의 최대치, 일반임대계약 시 ⇒ 600만원  
(※ 사후지원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필요로 하는 최대치의 금액 작성. 이후 심의 시, 보증금 잔액, 저축 및 보험 등 자산 확인 후 제외하여 선정함)
- 사례관리 대상자
  - 신청기관의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 사례등록일 작성
  - 신규 발굴 대상자 : 직접방문(대상자 ⇒ 신청기관으로 온 경우), 이웃신고, 타 기관에서 이관, 기타(복지플래너 활동으로 발굴 등)
- 가족사항 :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함(※세대주가 아닐 경우, '실무자 상담결과 및 의견에 사유를 반드시 작성)
- 경제상황
  -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지원여부 : 행정망 공문시행기관(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작성
  - 기준중위소득 50~120% 이내의 경우 증빙자료(건강보험납입내역서, 저축, 보험, 임차보증금 계약서, 부채증명자료 등) 면밀히 확인하여 신청 필요
- 주거현황 : 기존 사례대상이 아닌 경우,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방문 필요
- 사전계약현황
  - 주거지 미계약 시 ⇒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완료 시 ⇒ 기존 거주지 계약 연장/LH/SH/일반주택 체크 후, 유형 및 이주예정일, 금액 작성

-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 위기구분 : 주거, 가족, 경제상황 등 다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 사후지원 계획 :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자원연계 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의 활동에 대한 계획 작성

<p><b>①현재 거주지 위기</b></p> <p><b>[주거위기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의 주거위기상황이 처음 접수된 시점은 0000년 0월 0일로, 집합주택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li> <li>- 대상자는 0000년 00월부터 00분채 전세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거주 중이며 주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하고 싶으나 집주인과 협상불협가 안의 어려움 등지 도출을 요청함</li> <li>- 화장실에 변기를 사용하거나 샤워기를 사용할 때 향수구멍에 오수가 역류하여 보일러는 고장 나 정기간 사용하지 못함. 전기장판 플러그를 꽂으면 차가이 스위치가 내려감. 지하방으로 환기 창문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많음</li> <li>-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경매관을 대동하여 두 차례나 집주인을 만나러 갔지만, 부를 알아주지 않아 만날 수 없었고, 답을 넘어사라도 들어가 만나고 싶었지만 동행한 경매관이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만류함</li> <li>- 대상자는 지난 00개월간 00주거복지센터와 내공사 전세임대 하임 주위에 수차례 방문하여 상황을 알리고 안내받은 집차대로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회거 의사 명백한 알리기, 공사와 집주인에게 회거 의사를 알리는 내용명령 보내기 등을 진행함</li> <li>- 공사에서 0000년 00월부터 대상자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환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여 0월 0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주택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접수함</li> <li>- 0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신청대상자 심의 결과가 0월 00일 발표되므로, 내공사 기준주택 전세임대부에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였던 주택을 0000년 00월 00일 00분 주택에 거주를 허용한다는 의견임.</li> <li>- 대상자는 0000년 00월부터 다른 주택을 이사를 원함으로 한류 두분 모두 이삿비 40만원이 전부이며, 공사에서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이사를 나가도 없다는 통보만 전해를 본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미지수임</li> <li>-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9,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5%인 450만원이 필요함</li> <li>- 대상자는 0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180만원(9,000만원의</li> </ul>	<p>등거하는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해당 동을 기술했다</p> <p><b>②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는 30대 중반 가족을 위해 해외로 나가 봉사활동에서 발생한 중 큰 사고를 당해 귀국하였고 자살충동을 위해 가족과 함께 서울에 내려가서 생활함</li> <li>- 그러나 건강이 불안 회복되지 않아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발로되어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이용하는 데까지 이쁨</li> <li>-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장성한 두 아들을 한번 만나보았으나 상황이 변하지 못하고 비도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았고 대상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함</li> </ul> <p><b>③건강유해, 정신적 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는 30대 후반 과정에서 일하다 초콜릿을 당한 뒤로 고혈압이 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심한 통풍에 시달림</li> <li>- 거주하는 주택이 가파른 비탈에 있어 건강을 위해 산책하려고 해도 버스도 타고 내려와야 하고, 여름에 습한 공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움. 자주 버스도 타고 공원에 나가 공공시설에 나가다 보니 교통비가 많이 발생함</li> </ul> <p><b>④경제적사상, 직업, 소득 등의 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는 고령 나이에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명을 끼치지 않으려고 술과 담배를 끊고 집소하게 생활함.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국민연금 총액 월평균 57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이를 식비 30만원, 교통비 10만원, 전세임대 물세(이자) 5만원, 공과금(수도전기세도시가스) 5만원, TV 수신료등비 5만원, 장약지출 2만원, 일반저축 2만원(이사회비용준비), 기타생활비 3만원으로 지출함</li> <li>- 고령 나이에 주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00주거복지센터와 내공사를 오가며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끈질긴 노력을 보여 줌</li> <li>- 또한, 다수의 전세임대 임주자들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공사의 임대료를 채납하기도 하지만 대상자는 60만원이라는 작은 생활비로 막아다들 해 지는 편이냐기 위하여, 생활비를 아껴 쓰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 '희망동차' : 대상자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본 사업을 안내하였으나 과거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안내 또는 상담을 받지 못하였고 상담이 불충분하여 주민센터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함</li> <li>- 신한은행 위기지원 제기 지원사업 : 대상자는 본 사업이 대상자로 지정하는 간격스러운 유기에 본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미 기초생활수급이라는 복지지원을 받고 있어 본사업의 신청 대상자 부적으로 판단됨. 또한, 대상자가 00세 고령자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눈에 띄는 재기를 이루어 내기 어려움</li> <li>- 푸른 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 00주거복지센터에서 이미 00월에 본 사업에 다수의 보증금, 임대료, 기타 긴급생계비와 관련한 연계 지원이 신청되어 추가로 대상자의 사례를 신청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됨</li> </ul> <p>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의 사후지원 활동에 대한 계획을 기술했다</p> <p><b>⑤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주택에서와 같이 새로운 주거지에서도 공사 임대료(이자)를 채납 없이 제대 내내 주택임차보증금에 월 2만 원의 납부를 계속 유지하며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목표로 하여 월 60만원의 지출</li> </ul> <p><b>⑥3개월간 모니터링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차 : 주택발은 상담 1회 진행하여 주거지 이전에 대한 심리적 안정, 필요한 집기 확인</li> <li>- 2개월 차 : 전세 상담 2회 진행 : 정서적 지지, 건강상태 확인, 공공급할인 신청 안내, 주변 이용시설 안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한 후 해당 지역의 복지권에 연계하여 무료식사 서비스 등 영아 식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한 건물을 확보해 복지권의 여신들과 어울리면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계</li> <li>- 3개월 차 : 전세내방상담 1회 진행하여 전세내 내방 하도록 하여 지역정착 과정 확인</li> <li>- 4개월 차 : 전세 상담 2회 진행 : 건강상태, 공과금 납부, 지역주민 교류, 영아활동 등 모니터링하며 00분주택지원과 내담자의 사례관리 협력</li> </ul>
--	---	--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예시

<p><b>위기 상황 및 주요 상담 내용</b></p>	<p>우월수 작성사항</p> <p>1) 주거위기상황 : 무보증 물세(30만원)거주 현재 주거위기 2) 개인위기상황 : 최근까지 조급복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했는데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하는 상태 3) 가족 : 정년퇴직1인 가구</p>	<p><b>※ 다음의 자료와 같이 신청서 작성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b></p>
<p><b>담당자의 의견</b></p>	<p>우 월거명영으로 인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으로 인하여 주거복구 효과가 큼</p>	
<p><b>사후 관리 계획</b></p>	<p>우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우 3개월 간 모니터링 계획 우 사후지원 이관 계획이 있을 시, 이관 계획 작성</p>	

(‘20년 기준 신청서)

○ 신청 제출자료 목록 작성 \_서식2

- 목록 작성을 하는 이유는 신청 제출자료를 당사자가 확인하고, 담당자 및 팀장이 최종 확인하기 위함
- 당사자, 담당자, 팀장(기관장)의 서명을 필히 받아야 함
-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꼼꼼히 확인 필요
- 특이사항이 있을 시, 비교란에 작성 필요

신청 차수	차	신청자치구	구	신청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인)	담당 팀장 (기관장)	(인)	(인)
구분	제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단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직명 * 대상자= 해당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급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신청서 : 수급증명서 등임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선택 서류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형 거주확인, 월세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등명서 등	
			-	시설이용(민소해정)확인서	
		부채 증빙 자료	-	과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채시정신청서 등	
	임대상황 발생 관련 증명 자료	-	시중관련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	임대 임대주와 신청 안내문, 세입 입주 출 거주지 계약서 등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방정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영수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예시] 제출자료 목록 작성

□ 신청서 제출

- 제출필수자료 : **신청서 서식1, 신청 제출자료 목록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3, 소득 확인 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증빙서류 서식4.5**
-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기관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 등 전자결재를 이용할 수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함 (파일 용량이 크지 않게 전달함)
- 동 주민센터, 자치구 등 전자결재가 가능한 경우 전자결재로 자치구로 제출함

□ 신청서 작성 시 검토할 주거 관련 자원(주거복지센터상담매뉴얼 참고, '20년 기준)

- 공공임대 신청 여부 확인(주거담당 연계)

구분	유형별	내용	임대기간
건설형	영구임대	-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최장 50년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청약저축 가입자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최장 30년
	행복주택	- 신청자격 : 대학생,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한부모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각 계층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층: 6년 신혼부부계층: 자녀수에 따라 상이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한부모가족계층: 10년 고령자 등: 20년



구분	유형별	내 용	임대기간
	도시형생활	- 신청자격 : 1~2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 자	최장 6년 (대학생용 제외)
건설/ 매입형	희망하우징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입학 예정)인 학생(기혼자·졸업·유예·자·직장 재직 대학생·재외국민 신청불가)	최장 6년 (졸업시 재계약 불가)
매입형	재개발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특별공급은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	50년(특별) 10년(일반)
매입형	매입임대	[주거사다리지원사업] - 신청자격 : 일반, 청년, 신혼부부, 공공리모델링 등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최장 20년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2인 이상 가구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2인 이상 가구 3억8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최장 10년
임차형	기존 주택전세임대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령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가구는 60㎡ 이하)  [전세임대 즉시지원] - 신청자격 : 전세임대주택 1순위 대상자 중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로, 곰팡이·누수·결로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 저하세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및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 세대(상시 신청가능)  [주거사다리지원사업] - 신청자격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②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④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선정)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최장 20년

○ 임차보증금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양한 자원 확인 필요)

구분	어려이재단	대한적십자	이신복지재단	푸른남
사업명	기본생활지원	긴급지원 '희망풍차'	SOS복지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진행시기	연간운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저소득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2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700만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 및 재산 (단, 소중위소득 81~100% 이하인 대상자는 실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함)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장기간의 월세 채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지원 불가 세대 •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에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거지원	보증금 최대 500만원 (LH/SH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 (도배, 장판, 공부방 개선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보증금 100만원, 주거안정비 최대 200만원 ※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주택정책과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대상, 조건 등 안내 공문	보증금 500만원 (대도시기준/최초1회) 월임차료 65만원 (3~4인가구/대도시기준) ※ 1~2인가구/대도시기준 50만원 ※ 원칙상 월임차료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 단, 보증금을 지원받을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거비 (자세한 내용 부족)	주거비 최대 500만원 (본인부담금 있음)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기타지원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긴급지원, 인재양성지원, 방송사레지원 등	의료, 생활비,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 등 (전기료, 건강보험료, 해산비 및 장제비 등)	생계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신청방법	- 관공서 및 협력기관, 유관기관에서 재단으로 신청 -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 대상자⇒적십자콜센터 (1577-8179) 및 거주지역 적십자 지사, 홈페이지 문의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관⇒온라인 접수 ( <a href="http://www.asanfoundation.or.kr">http://www.asan foundation.or.kr</a> )	- 신청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 메일신청 ( <a href="mailto:pumanun@gmail.com">pumanun@gmail.com</a> )
사후관리	- 후원금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요구될 시 적십자 봉사원 결연 지원	- 신청기관에서 3개월 사후관리	-
특이사항	- 아동으로 대상 한정됨	- 연간 예산 후원금 모금에 따라 조정됨	- 자립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 2021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관내 복지관 연계, 중복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지원대상	주요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보장받고 있는 급여 관련 항목은 지원 지양 -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인 가난이나 발병한지 오래된 질병 등 “긴급위기” 로 보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양함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 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노숙인 지원	- 서울시 노숙인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시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가능 (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외국인 지원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가능(단, 총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최대 3회)

항 목	내 용	지원원칙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 현금지원 원칙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냉난방용품 구입: 선풍기의 경우 지원가능하나 에어컨은 지원지양 → 단, 에어컨은 욕창환자 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기금배분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단,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맞춤형 현물 지원 및 대납 원칙 ·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의료비 선결제 불가(단, 당일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 ·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단,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 ·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 검사비 지원 불가(단,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	
	※ 지원금액: 개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단, 가구당 최대금액은 300만원으로 제한, 지원금액 100만원 초과한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가분야 이외 기타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 □ 대상자 선정 안내

### ○ 자치구 공문 내용 확인(배분심의위원회 후 12일 이내)

- 대상자 선정은 신청기간 마감일 후 2주 이내 배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배분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안내 공문 발송
- 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에게 확인

### ○ 미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결과에 대해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안내
- 타 민간자원 및 공공임대에 대해 안내
-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 미비하여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에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의 가능

### ○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재단에서 제공되는 선정안내문 출력 후 제공 (\*선정안내문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예정)
- 집은 당사자가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
- 단, 장애 및 노인 등 집을 당사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담당자가 동행하여 지원 (협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연계 추진 가능)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 □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 집 계약 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 (서류 재확인)
- **서약서,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 ★ 중요 ★

- 제출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일 제외) 지급
- 재단에서는 사후지원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
- **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1. 00구 복지정책과-0000(2020.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20년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결정 대상자

대상자	사후지원 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원)	비고
홍길동 (50.05.14.)	00동주민센터	3,000,000	3,000,000	SH 전세임대 계약

붙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끝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 자치구 지급신청 공문 예시

## □ 사후지원

- **선정기관에서 임차보증금 선정 후 3개월간 사후지원(모니터링) 필수**
- 당사자 구·동 진출하여 해당 동에 전입 시 대상자 연계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당사자 이사 후 거주지 모니터링하며, 사진 촬영 필수
- 이사 후 어려운 점 확인하여, 자원연계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참여


### ★ 참고 ★ 주요 연계자원 리스트 (2019년 현장모니터링 결과)

- 주거정보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 공공부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 긴급복지지원 : 동주민센터, 희망온돌
- 이사비, 주거환경개선 : 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지사협, 주민모임 등)
-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법률관련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동주민센터(우리동네변호사)
- 일자리관련 : 고용보험공단 (자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 건강관련 : 301네트워크, 보건소, 동주민센터(방문간호사)
- 의료비지원 : 희망온돌 지역기금(지역복지관), 위기가정지원사업(이랜드재단, 초록우산) 한국자원봉사협회(은둔환자치료 등)
- 밀반찬, 식사 등 : 지역복지관, 동주민센터(나눔이웃 등)
- 아동관련 : 드림스타트
- 저축 관련 : 청약가입, 희망플러스(조건부수급/일자리있는경우) 등
- 돌봄 관련 : 주민센터(돌봄SOS, 나눔이웃), 종교 모임 등

## □ 결과보고서 작성

### ○ 결과보고서<sup>서식6</sup> 작성 방법

- 가정방문일자 : 이사 후 최초 방문 일자 작성
- 신청차수 : 선정된 차수를 작성
-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작성 : 주거지원 외 연계자원 모두 작성(예시 삭제 후 작성)
- 지원 후 주거지 사진 : 주거지 이전 사진 있을 경우 전/후 사진 삽입
- 사후관리 상담기록 : 어떠한 상담들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 순, 상담내용 간략히 작성
- 변화사례 : 당사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적응하는 복합적 변화를 확인
  - ※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 향후계획 : 이후 추가지원 계획, 진출 자치구/동 연계 계획 등 작성 (예시 삭제 후 작성)
- 만족도 :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이사 전/후 비교 질문임을 확인 후 체크**
- 증빙자료 : **계약한 집으로의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1부**

<b>임차보증금 지급 이후 재판 서비스</b>	<b>[임차보증금 지급]</b> ○ 서울형일자리지원사업의 보증금 300만원 지급으로 (연세세입대주복(7,500만원)임대차 계약완료 후 2019년 11월 6일 이사완료  <b>[기타 제공된 서비스]</b> ○ 이전 거주지, 제남 주거비 지원: 2개월 물세 체납되어 원할 한 이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가동제품지원 -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 모체서 냉장고를 구입해 줌 ○ 가동상품 지원	<b>변화 사례</b>	○ 주거안정 - 매월 35만원 월세부담이 상당했고 제대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집주인과 마찰이 심했으나 지금은 12만원 기금이지만 납부하면 되고 주거급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됨. 동시에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하여 더 이상 체납사항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감도 소거됨. ○ 건강회복 - 오랜 생활고가 이어지면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압수술도 받았던 상황에서 일을 중단하고 매일 걷기운동을 하면서 심신이 회복되고 있어 내년 봄 정도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함. ○ 가족관계 회복 - 당사자가 그동안 늘 어렵게 살고 좁은 지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해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왕래가 없었다가 이번 이사를 계기로 얼마와 형제가 다녀갔으며 냉장고도 마련해 주시면서 격려함.
<b>지역 후 주거지 사진</b>		<b>향후 계획</b>	○ 자립계획 - 직업적성검사 (아들):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정기적인 자립지원 플랜 필요. 자립지원별도기구로 아들은 할 수급하여 자립준비 증이고 당사자도 2020년에는 자활사업 등 참여계획임. ○ 저축계획 - 2년 후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이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임.

[예시]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결과보고서, 등본 송부 필수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과일(.hwp) 로 송부될 수 있도록
- 담당자 별도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됨

**연장·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재단 ⇒ 선정기관에 기간 초과 시 연락하여 확인, 자치구는 공문 전달 역할 수행
- 선정기관 ⇒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문 제출

**★ 중요 ★**

- 차수 및 지원금, 연장취소사유를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수신 **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3차) 선정 대상자 취소 요청**

1. 복지정책과-20879(2019.7.24.)호 관련입니다.  
2. 우리동 2019년 희망은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차 선정 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원 취소를 요청합니다.

○ 신청가구

연번	신청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액	지원취소사유
1						

선정기관 ▶ 자치구 선정 연장·포기신청 공문 예시

## ★ 참고

#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서울시에는 서울시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중앙1개소, 자치구 25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은 누구나 상담과 주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구 분	상 담 내 용	
주거정보	공공임대주택	• 유형별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정보제공 •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대상 맞춤 임대주택 추천 • 임대주택 공고알림 등록 등
	청년·신혼부부 상담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정보제공 •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 청년 신혼부부 정책제안 및 연구
	주택물색	• 민간주택 이동 물색 • 전세임대주택 물색 • 착한부동산 연계
	생활시설소개	•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 생활시설 안내
	주택금융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안내 등
	주거비보조	•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안내 방법 •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서울형 특정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청약정보	• 청약저축 활용방법 및 가입방법 • 인터넷청약 방법
	재개발	• 재개발 추진절차 • 세입자 주거대책 등
	임대차 관계	• 입주계약, 퇴거 시 유의점 • 임차인 보호제도

구 분		상 담 내 용
주거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	• 소액보증금, 연체 및 발생 예정 임대료와 연료비, 공과금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에서 직접 주거비 지원 및 외부 자원 연계)
	집수리	• 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단집수리 관련 상담 • 공공집수리(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등) 안내 • 민간 집수리(민간 집수리 사업 안내 및 연계) 안내 등 • 공구대여 서비스 안내
	기타	• 주거비와 관련한 기타 상담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동행
	긴급복지제도	• 긴급복지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담당 부서로 연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동행
	민간복지자원	• 희망운동지원사업 등 복지기관의 복지사업 안내 진행 • 복지사업 연계 사업
	기타	• 기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복지정보 제공 및 기관연계
기타	•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 ▪ 주거비 지원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차 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의견서(140만원 초과지원 필요시)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 도시가스전용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80만원 및 최대 지원 개월 수 초과 지원 필요시 의견서 첨부

※ 주거비 지원은 센터별 선정위원회의를 통해 선정

## 3 이용방법

- 유선상담, 내방상담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상담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
-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www.seoulhousing.kr) :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시, 관할 주거복지센터에서 연락하여 상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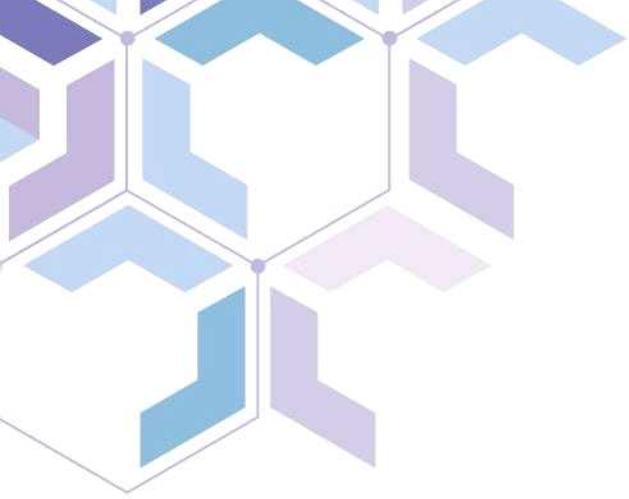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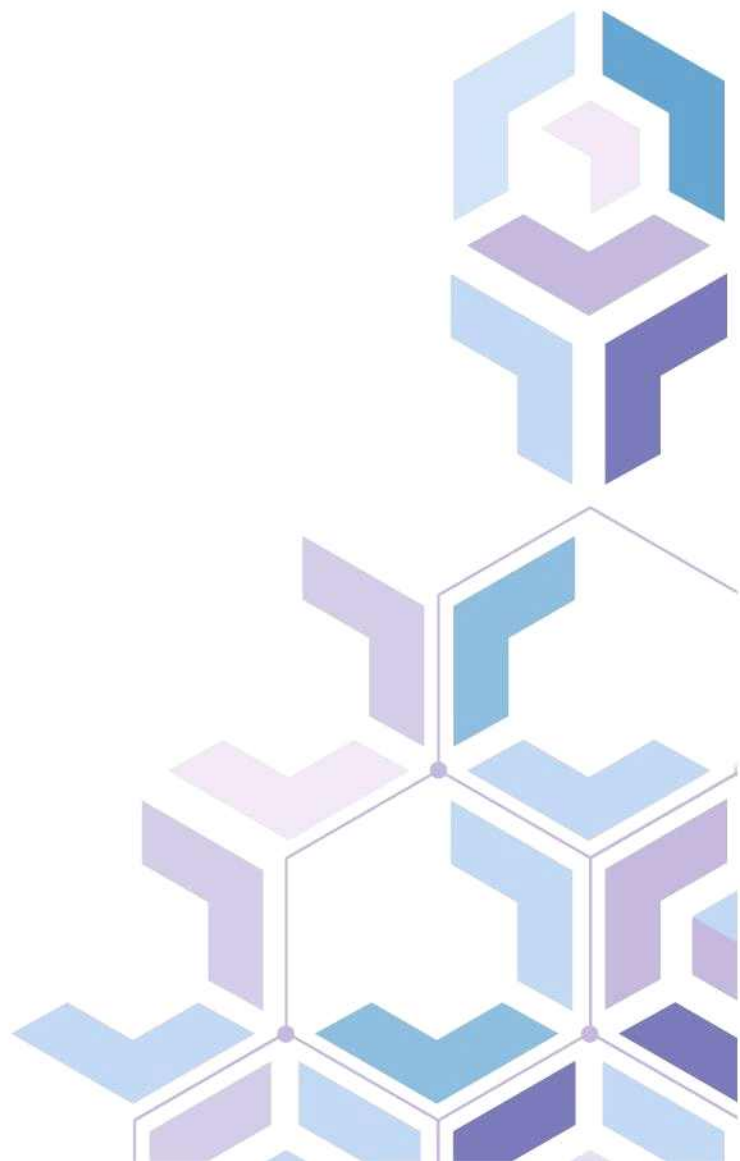
##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중앙주거복지센터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02-2135-5693
종로주거복지센터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9, 301호	02-722-8658
중구주거복지센터	중구 마른대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2138-8791
용산주거복지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02-6713-5055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802호	02-6933-8051
광진주거복지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02-2138-8373
동대문주거복지센터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02-2138-1901
중랑주거복지센터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 103호	02-3421-8961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	02-922-5942
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02-980-4808
도봉주거복지센터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 렉시온프라자 204호	02-6958-8081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은평주거복지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4호	02-388-2979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대문구 가좌로 77, 2층 201호	02-303-3733
마포주거복지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 2차 208호	02-6383-6100
양천주거복지센터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02-6933-6190
강서주거복지센터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 204-1호	02-2661-0896
구로주거복지센터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02-853-9275
금천주거복지센터	금천구 두산로70(독산동,현대지식산업센터) B동1311-2호	02-855-4522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301호	02-785-7044
동작주거복지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 131-1, 2층	02-816-1688
관악주거복지센터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02-875-3197
서초주거복지센터	서초 청계산로9길 1-3, 서초 선포레 1층	02-6202-9000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 309호	02-3453-2270
송파주거복지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02-400-2271
강동주거복지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제5층 507호	02-6933-6870





#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서식





서식1. 신청서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접수 : 행정망 공문시행(전자문서LDAP)  
 (자치구의 확인·검토 후 공공 행정망으로 접수한 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 자료는 원본성격과 동일 함)

		실무 담당자		연락처		차수	차			
신청기관명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신청금액		만원								
신청 대상자	성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현 주소									
	사례 관리 대상자	신청기관의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등록일	00년 00월 00일						
	신규 발굴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대상자 → 신청기관) <input type="checkbox"/> 이웃신고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에서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가족사항 (본인 포함) ※신청대상자는 세대주 이어야 함	성명		연령	관계	직업	해당하는 경우만 O 표시				
						동거여부	미취학 65세 이상 장애인 기타( )			
		가구유형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친인척·제3자 <input type="checkbox"/> 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 자녀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경제 상황	사회 보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50%~120%이하(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b>※ 이 영역은 행정망 공문시행기관(자치구)에서 확인하여 작성 함</b>								
	소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소득 없음								
		근로수입* (월 평균) 만원	정부지원금(월 평균) (만원)					후원금 (월 평균)	저축액 (누적)	보험금 (누적)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자녀 지원	기타			
		<b>※ 정부지원금은 신청서 제출 시점으로 작성함</b> <b>※ 근로수입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의 모든 수입을 총합 함</b>								
부채 현황	□금융대출(만원):		□카드연체(만원) :		□사채(만원) :		□기타(만원) :			
		□부채사유 : (※ 부채 증빙자료 제출)								
긴급 복지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원 (지원시기 : 년 월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 <b>※ 최근 1년 내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지원 경험도 포함</b> <input type="checkbox"/> 미지원 <b>※ 이 영역은 행정망 공문시행기관(자치구)에서 확인하여 작성 함</b>									

		구분	해당(O)	비고	구분	해당(O)
현재 주거 형태	점유 형태	자가			거처 유형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   만원)	LH, SH, 민간임대 등 해당사항을 작성 함		아파트
		월세	보증금(   만원)	월 임대료 (   만원)		연립주택
		무상거주		소유주와 관계 (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촌
						사회복지시설
						기타
주거 상황	주거비 채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채납 월 수 (   )개월	채납 총액 (   )만원	
	주거 환경	• 주거 위치 <input type="checkbox"/> 지상 <input type="checkbox"/> 지하(반지하포함)				
		• 방 개수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이상				
		• 난방형태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탄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공동				
		• 주방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공동				
• 창문(외부환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이상						
사전 계약 현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존 거주지 계약 연장 <input type="checkbox"/> LH <input type="checkbox"/> SH <input type="checkbox"/> 일반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    )만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전세임대 <input type="checkbox"/> 매입임대 이주예정일: 00년 00월 00일			<input type="checkbox"/> 월세 (    )만원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각 주제 별로 간략히 작성)	위기 구분  ※ 해당 하는 번호는 모두 작성 함	①현재 거주지의 위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이유와 환경 등을 기술			
		②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위기	동거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배경 등을 기술			
		③건강(육체적, 정신적)의 위기	본인(동거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기술			
		④경제력(자산, 직업, 소득 등)의 위기	본인(동거 가족)의 안정적인 수입 발생 가능성 등을 기술			
		⑤자원(공공, 민간) 연계망의 위기	공공과 민간 자원망의 연계 및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 등을 기술			
	사후지원 계획(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이관 등)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의 사후지원 활동에 대한 계획을 기술				
자치구	(    )구	※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00구청 0000과 000팀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신청 차수	차	신청자치구	구	신청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담당 팀장 (기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i>※ 대상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i>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i>(※신청일 기준 등본)</i>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i>(※장기요양보험비 제외)</i>	
선택 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원 거주확인, 철거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부채 증빙 자료	<i>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i>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 자료	<i>사례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등</i>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i>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 할 거주지 계약서 등</i>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제출자료 목록표는 수기 작성하고, 신청자 및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광역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이문현 6353-0303)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 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이관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운동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서식4. 주거비체납 관련 증빙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5.05.01 보증금 : 6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6.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6.10~2016.12(3개월) 2. 2017.03~2017.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아파트, 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_\_\_\_\_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 단독, 주택 등) **임대인** : \_\_\_\_\_ (인)

연락처 : - -



서식6. 결과보고서 양식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결과보고서

		★가정방문 날짜	<input type="checkbox"/> 2020. 08. 23
신청차수	n차	자치구	구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p>[임차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원으로 임차계약완료 후 2020.7.15 이사완료</p> <p>[기타 제공된 서비스] ○이사비용 - 디딤돌 이사지원 업체 연결 ○가전제품 - 00전자 가전제품 후원(TV) ○조건부과사항인 금융상담 및 가계경제 관련 상담 및 교육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8.07.02 1차, 08.05 2차 상담 및 교육진행함 ※심의(솔루션) 결과통보 시 조건부과된 경우 이행사항 필히 기록</p>		
지원 후 주거지 사진	사진1	사진2	
사후지원 상담기록 (3개월 시간순)	<p>○2020.7.15.상담내용 간략히 ○2020.8.12.상담내용 간략히 ○2020.9.16.상담내용 간략히</p>		
변화 사례	<p>※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p>		
향후 계획	<p>○주거유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 사항 체크 예정 ○복지관 이외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 종교시설에 동행 예정 ○동주민센터, 체육공원 등의 시설 이용 정보 제공함</p>		

★만족도 ※ 대상자 확인 후 체크	1-1. 본 사업 지원 전 주거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1-2. 본 사업 지원 후 주거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2-1. 주거지 이전 전 삶의 질 					
2-2. 주거지 이전 후 삶의 질 					
증빙자료 첨부	체크	증빙내용		부수 (매)	비고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 제출일 기준 등본 1부 (계약된 거주지로 이사 여부 확인 위함)		1	

위와 같이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후지원기관명(부서명):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지원 서약서

서울시복지재단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일천육백만원(₩6,000,000)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받아 계약하였습니다. 임차인 홍길동은 다음을 서약합니다.

1. 임차보증금 외 월세체납 변제, 부채상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주거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기관 \_\_\_\_\_의 사후지원(가정방문·유선연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2021. . .

임 차 인 : 홍00 (서명)

담 당 자 : 김00 (기관명) (서명)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 안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1년 4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안내드리는 지원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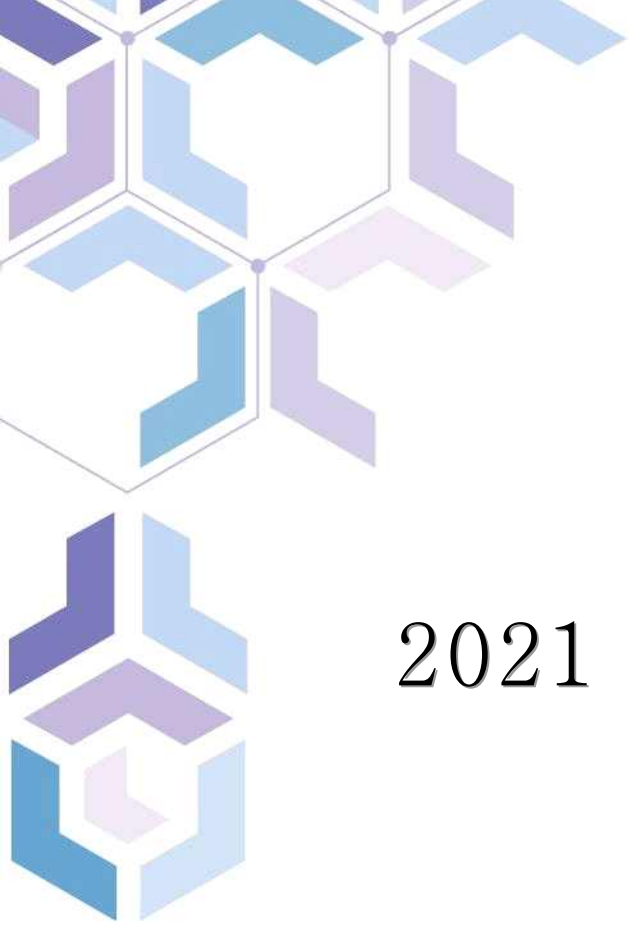
### ▶ 지원절차 ◀

1. 주거지 계약 : 귀하께서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진행함  
(※장애인, 노약자 등 직접 계약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관에 동행 요청함)
2. 지급요청 서류 제출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서약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함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함)
3. 지급요청 서류 제출 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일 제외) 임대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함.  
(※ 서류검토 시, 오류가 있을 경우 늦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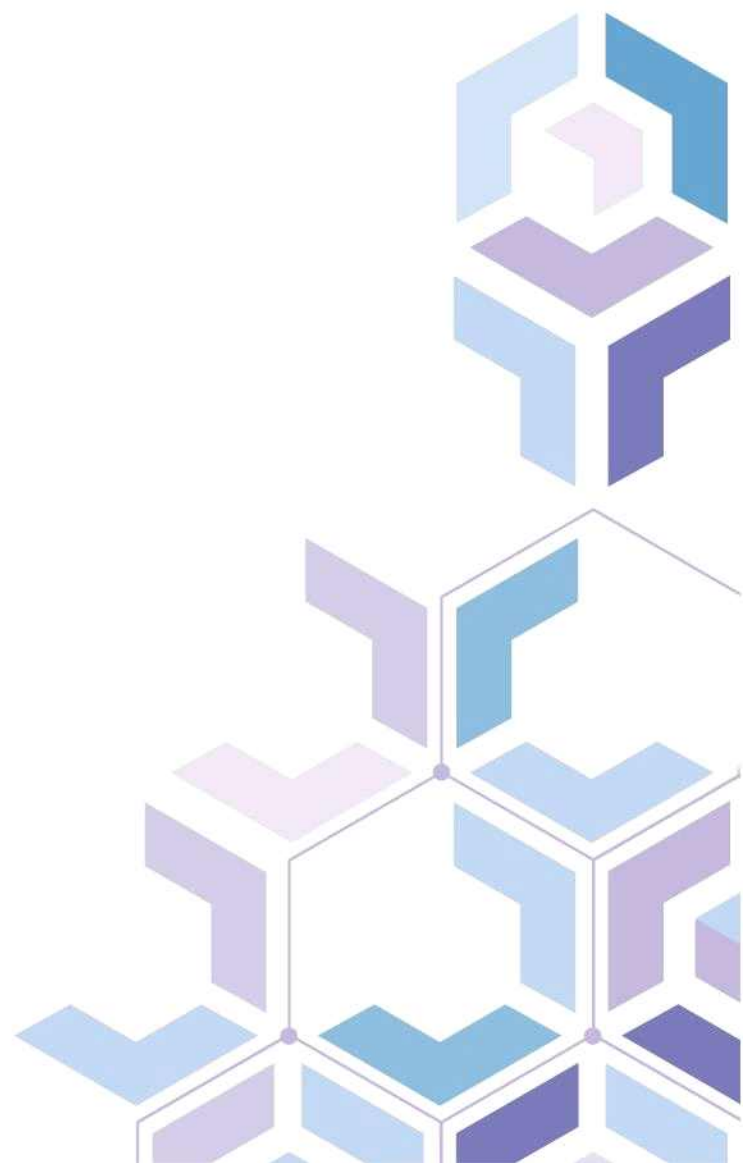
### ▶ 지급요청 기간 ◀

2021.07.23.~08.31.이며, 최대 2021.10.31.(토)까지 연장 가능함.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2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질의응답







## Q 1

### 사업 신청서는 자치구만 재단에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재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첨부 자료의 공적인증을 위해 일반 메일이나 팩스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든 문서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로인한 번거로움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희망은돌사업이 지향하는 ③지역의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자원공유 및 연계 ④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및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추천은 사후지원이 가능한 자치구(구청,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자치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Q 2

### 신청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	작성내용
자료제출목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수기로 체크 및 대상자, 담당자, 기관장이 서명하여 첨부. 제출 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업신청서	신청가구 현황 및 신청내용 요약, 신청가구에 대한 세부현황, 위기상황 발생원인, 사후지원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후지원기관, 자치구, 재단,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동의서
증빙 자료	등본, 소득기준자료(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내용(위기상황) 및 지원결과를 증빙하는 적합한 근거 자료

## Q 3

### 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결정을 받았는데, 부족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민간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비의 경우 : 긴급복지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x3개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서비스 자원을 연계했음에도 부족한 경우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합니다.

**Q 4****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에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미선정된 사례입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심사 시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미선정된 사례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필요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은 적절했으나 사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증빙 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류된 사례는 자치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5****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선정결과통보는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공휴일 제외) 자치구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사후지원 기관은 각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선정결과를 전달받아 기금지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6****지원대상 선정 후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은 지원가구(개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LH,SH공사 등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전산망(LDAP)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되오니, 신청가구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 중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지급요청 공문 작성 시 제목에 <2021년 제○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지급요청(홍\*동)>으로 해주시고,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가구 인적사항과 지급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명	분야	요청금액	지급처(임대인)	비고
홍길동 (68.01.01)	주거비	3,500,000	- 예 금 주 : 김미자 - 은 행 명 : 00은행 - 입금계좌 : 123-5678-91-123426	선정된 4,000천원 중 계약금액 70,000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5%인 3,500천원 지급요청하며, 차액(500천원) 사용예정 없음

※ 모든 회계처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합니다.

**Q 7****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대상자의 사정으로 기금집행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집행은 선정결과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가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유와 사용계획서(선정결과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집행)를 작성하여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사용 연장 승인」 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제출된 사용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다른 가구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여부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 후 사용치 않을 경우 '포기'나 '취소' 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배분은 총 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 Q 8 기금 지원 후 결과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는 보증금 지급일 기준하여 3개월간 지원가구를 모니터링 한 후 제공된 양식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 Q 9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추진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치구 담당자가 답변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